

[의사명의대여]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“개설” 및 “운영”의 판단기준 + 무자격자 개설 금지

+ 자격자의 중복개설, 2 중 개설 금지 규정 해당 여부



1. 무자격자 개설행위

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09도 2629 판결 : “구 의료법(2007. 1. 3. 법률 제 820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 30 조 제 2 항, 제 66 조 제 3 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,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총원·관리, 개설신고, 의료업의 시행, 필요한 자금의 조달,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.

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,

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**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.**

한편 의료법 제 30 조 제 3 항, 제 4 항, 제 6 항 및 그 시행규칙 제 22 조의 2, 제 22 조의 3 등에서는 의료기관의 최초 개설에 따른 신고절차 외에 개설자의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. 이러한 제반 규정의 내용 및 의미와 의료법의 입법 취지, 형벌법규의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,

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**개설자의**

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·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

개설·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·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

의료법 제 30 조 제 2 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**개설행위**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.”

2. 자격자의 2 중 개설 및 운영 행위

“의료법 제 33 조 제 8 항에서 의사가 **개설·운영**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 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.

따라서 이미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그 의사 명의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을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고 있는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.

또한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개설·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의료법 제 33 조 제 5 항 등에

다른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
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
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, 의료업의 시행, 필요한 자금의 조달,
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
의료기관 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
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한
경우에 해당한다.”

자격증분쟁, 면허대여, 2중개설, 민형사소송, 행정소송, 전략적총괄대응, 실무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